

2022년 7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규신청자부터 실업인정 제도가 달라집니다!



재취업활동은 적극적으로 기준에 맞게

- ✓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
(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2호·4호)
- ✓ 1차 실업인정일은 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이수
- ✓ 2차, 3차, 4차 실업인정일은 재취업활동 최소 1회 이상
- ✓ 5차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
최소 2회 이상 해야 하며, 이 중 구직활동을 1회
이상은 반드시 포함
- ✓ 반복수급자, 장기수급자인 경우에는 실업인정을
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요건이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
되오니 반드시 담당자의 안내에 유의하여 수행
- ✓ 특히 허위/형식적 구직활동은 행정조사 대상이 되며
면접불참/취업거부 등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
판단되면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부지급

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 수급 가능



- ➔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, 실업인정(구직급여)을 받기
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필요
-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일할
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수행했는지를 담당
자가 확인하고 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
- ➔ 구직활동(입사지원, 채용면접 등)이 아닌 재취업
활동은 횟수 제한
- 온·오프라인 취업특강은 3회, 직업심리검사는 1회,
심리안정 프로그램은 1회까지만 실업인정
- ➔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
- ➔ 동일한 날짜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개 했다면 1건만 인정
- ➔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만 60세 이상,
장애인 수급자에 한해 인정
- ➔ 실업인정 신청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가능하며
출석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
- 1차, 4차 실업인정일은 출석만 가능
- 그 외 실업인정 차수는 온라인 신청 가능(다만, 취업지원
등을 목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)

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해 적극 지원



- ➔ 1차, 4차 실업인정일에는 대면 취업상담
- ➔ 수급자 누구든지 원하는 고용서비스(취업알선,
훈련, 컨설팅 등)를 최대한 지원
- ➔ 재취업지원이 보다 더 필요한 대상자(반복·장기
수급자 등)에 대해서는 서비스 집중 제공

실업인정 제도 개정내용 안내

	재취업활동 최소 횟수	재취업활동 인정 범위
현 행	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주기	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
	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	모든 수급자 같은 기준 적용



개 정	일반수급자	
	1차~4차 실업인정일: 4주 1회	1차는 집체교육, 2-4차는 선택가능
	5차 실업인정일~만료일: 4주 2회	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
	반복수급자(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)	
	1차~3차 실업인정일: 4주 1회	1차는 집체교육,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
	4차 실업인정일~만료일: 4주 2회	구직활동만 가능
	장기수급자(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)	
	1차~4차 실업인정일: 4주 1회	1차는 집체교육, 2-4차는 선택가능
	5차~7차 실업인정일: 4주 2회	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
	8차 실업인정일~만료일: 1주 1회	구직활동만 가능
	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	
	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	1차는 집체교육,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

✓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요!